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
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0/08}
이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124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를 삭제한다

제8조(주차거부의 금지) 제6호를 삭제한다.

제8조(주차거부의 금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7.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공유 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중 전용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이하 “공유 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 공유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주차공간 공유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는 공유 주차구획 제공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 요금표 비고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공유 주차구획 이용시 1구획의 주차요금은 기본 30분당 600원, 추가 10분마다 2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자동차의 운행제한장치 설치 내용과 관련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여 이용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장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주차공간 공유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내용 삭제(제7조)
- 나. 인용조항 해당없음에 따른 삭제(제8조제6호)
- 다. 인용조항 해당없음 및 인용조항 변경에 따른 수정(제8조제7호)
- 라. 공유주차 구획 운영내용 추가(제12조2)
- 마. 공영주차장주차 요금표 비고란 공유주차구획 이용요금 내용 추가(별표 1)